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4 선고 2023가단5502358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4. 5. 14.

판 결 선 고 2024. 6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45,822,780원 및 2023. 12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465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류희현

별지